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상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동안 시험 업무 수당은 관련 규정과 예산을 통해 지급되어 왔으나, 조례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

고,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적용 대상을,

안 제3조는 시험 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 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